

[가맹본부의 로고]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215332] [본부 인터넷주소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2021.11.16] -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2024.12.10] 대표이메일주소
realchangup@naver.com]
[동까스 1988]

정 보 공 개 서

[더 제이 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더 제이 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길 10, 더퍼스트타워 비즈스퀘어M 1002호(영천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599-481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504-421-159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팀1599-481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더제이푸드	동까스 1988 외 5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길 10, 더퍼스트타워 비즈니스퀘어M 1002호(영천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6.03.02	김진구	1599-4815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391-26-00186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자	김진구/ 더제이푸드	동까스1988 외 5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길 10, 더퍼스트타워 비즈 스퀘어M 1002호(영천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진구	1599-4815	0504-421-159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더블제이푸드	칸죽	2023.05.30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 길 10, 더퍼스트타워 비즈 스퀘어M 1512-C02호(영 천동)	김진구 전재구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등지닭볶음탕	등지 닭볶음탕	2024.1.2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9 마길 16, 지하1층 일 부(서교동)	이원진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동까스 1988]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동까스 1988	
상 호	동까스 1988 0 0 점	
상표(서비스표)	준비중입니다	
그 밖의 영업표지		
광 고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3,867	3,670	20,197	351,878	-25,273	-25,273
2022년	30,124	7,197	22,927	625,990	2,729	2,729
2023년	133,036	484,953	-351,916	2,501,523	198,705	194,782

[별첨 1 : 재무 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사업내용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진구	대표	2016.03.02.~현재	더제이푸드	회사 총괄
		공동대표	2018.09.28~현재	더블제이푸드	회사 총괄
		공동대표	2020.05.30.~2022.02	고씨네푸드	회사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2

*원천징수신고 인원 총3명중 상근임원이 1명 포함되어 있어 직원 수는 2명입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동까스 1988]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아보오반점	음식점	2022.05.30~현재	아보오반점 - 외식업 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20494
가맹본부	1키로탕수육	음식점	2021.07.01~현재	1키로탕수육 - 외식업 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1037
가맹본부	바리스타미스김	음식점	가맹사업예정	바리스타미스김 - 외식업 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5333
가맹본부	1키로갈비후라이	음식점	2023.05~현재	1키로갈비후라이 -외식업 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90276
가맹본부	둥지닭볶음탕	음식점	2024.01~현재	둥지닭볶음탕 - 외식업 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1356
특수관계인	더블제이푸드/ 칸죽/김진구	음식점	2022.06~2023.05	칸죽 - 외식업 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90276
가맹본부	빅카투스피자	음식점	2021년~2023.06	빅카투스피자 - 외식업 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5339
가맹본부	도쿄짬뽕0820	음식점	2017.04~2022.06	도쿄짬뽕0820 - 외식업 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61179
특수관계인	더블제이푸드/ 반칙왕식탁/김진구	음식점	2018.08.01.~2022.06	반칙왕식탁 - 외식업 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90276
특수관계인	고씨네푸드/ 고씨네고추장찌개 /김진구	음식점	2021년~2022.02	고씨네고추장찌개-외식업 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0108

*2022년 6월에 가맹사업인 반칙왕식탁의 영업표지를 칸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 칸죽 영업표지를 1키로갈비후라이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쿄짬뽕0820 가맹사업은 2022년 6월에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빅카투스피자 가맹사업은 2023년 6월에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없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동까스 1988]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계약체결사실은 없습니다.

2. [동까스 1988]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더 제이 푸드	동까스 1988	김진구	가맹사업예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길 10, 더퍼스트타워 비즈스퀘어M 1512호(영천동)
더 제이 푸드	동까스 1988	김진구	2024.6.12. ~ 가맹사업예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길 10, 더퍼스트타워 비즈스퀘어M 1002호(영천동)

3. [동까스 1988] 업종

영업표지	업종	
동까스 1988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일식	돈까스 등

4. 바로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동까스 1988]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사업미개시로 해당사항 없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동까스 1988] 가맹점 수 변동 현황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사업미개시로 해당사항 없음					
2022						
2023						

6. [동까스 1988]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는 [동까스 1988]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더제이푸드	아보오반점	20220494	중식	해당없음	7/0	8/0
가맹본부	더제이푸드	1키로탕수육	20211037	중식	12/0	10/0	108/0
가맹본부	더제이푸드	바리스타미스김	20215333	커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가맹본부	더제이푸드	1키로갈비후라이	20190276	한식	2/0	0/0	0/0
가맹본부	더제이푸드	둥지닭볶음탕	20201356	한식	2/1	2/1	1/1
가맹본부	더제이푸드	도쿄짬뽕0820	20161179	중식	12/1	4/0	4/0
가맹본부	더제이푸드	빅카투스피자	20215339	피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고씨네푸드	고씨네 고추장찌개	20200108	한식	해당없음	2/0	2/0

*2022년 6월에 가맹사업인 반칙왕식탁의 영업표지를 간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 간죽 영업표지를 1키로갈비후라이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쿄짬뽕0820 가맹사업은 2022년 6월에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빅카투스피자 가맹사업은 2023년 6월에 자진취소 하였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동까스 1988 가맹사업은 시작예정이므로 바로 전 사업연도에 가맹점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사업 미개시로 해당사항 없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동까스 198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동까스 1988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사업미개시로 해당없음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가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광고 및 판촉활동을 참고하십시오.

아래 금액에는 1키로탕수육, 동까스1988, 바리스타미스김, 아보오반점에 관한 광고 판촉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를 기재한 것으로 실제 사용한 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천원,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비공개)	13,145	 (비공개)	-	-
광고		(비공개)	0	 (비공개)	-	-
판촉	-	 (비공개)	13,145	 (비공개)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진행하므로, 귀하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해당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동까스 1988]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4,400]				
영업표지사용권 대가(가맹비)	2,2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귀하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 료된 경우, 미경 과 일수의 비율 에 따라 반환	소멸성 비용	-
교육비	2,200				

[귀하는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때까지 당사가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			
보증금	1,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상품대금 미결제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5,4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5,400]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가맹비)	2,200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	1,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19.8㎡(6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약15,620~ 15,950]	[약2,604~ 2,659]			
필수 집기	협력업체(미정)	1,320	220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협력업체(미정) 또는	약11,000	약1,834	인테리어 업체와 별도 계약	공사 전 계약취소	전면유리공사, 철거, 어닝, 홀딩도어, 테크, 냉난방, 소방, 전기승압, 닥트 별도
간판 및 사인물	가맹점사업자 업체 임의선정	약1,650	약275	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	공사 전 계약취소	
도시가스 설치 가스배관공사	협력업체(미정)	약1,650~1,980	약275~330	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	공사 전 계약취소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시세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경우, 인테리어 도면 제공 및 본부직원 파견 점검에 대한 대가로 3.3㎡당 금33만원(부가세포함)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기 금액 이외에 별도 구입품목: 초도물품(원부자재)

*렌탈품목: 포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

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귀하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당사가 상권분석과 관련하여 입지 선정 조인→가맹희망자 입지 선정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가 최종 의사 결정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동까스 1988]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9) 가맹금 분할 납부 : 해당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광고 분담금	당사	V.9 광고 참조	광고계획에 따름	광고 미 시행	-	기타 지역광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임의의 시행
교육훈련비	당사	100/1인당	교육 2일 전	-	소멸성 비용	
점포환경 개선 비용	협력업체 (미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29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당사	연18%	지급 기일의 다음 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원·부재료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경과 시 부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미정)	3,300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공사 전 계약 취소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정기 광고비	당사	매월 110	매월 25일	광고 미 시행	후불로 반환안됨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접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2023년, 단위:천원)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가맹사업 미개시로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가맹사업 미개시로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위생처리	가맹점사업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감독	분기별 1회	문의: 가맹사업팀
영업장부, 회계자료	가맹점 운영 및 영업과 관련한 영업장부, 회계자료 작성 및 유지	매월 1회	
입 • 출고, 매출상황 기록	상품 의 구입과 판매에 대한 입 • 출고 및 매출 상황 기록 유지	매월 1회	
가맹본부 이행 지침	가맹본부의 매뉴얼, 본사 지침 이행 여부 등	매월 1회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	점포이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동까스 1988]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 양수가맹비(신규계약자의 50%)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7.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100,000원의 위약금을 부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와 관련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 100,000원의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보유하는 운영매뉴얼 등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15일 이내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동까스 1988]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부가세별도)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사업미개시로 해당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 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해당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당사가 제시한 상품·용역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상품 공급의 제한 및 중단, 계약 해지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고,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공급하는 품목만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상품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해당 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에게 권장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돈까스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종	돈까스 1988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비고
영업지역 설정은, 가맹점사업자간 이격거리를 직경 2km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다음의 경우는 일반 매장의 영업 지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철도 또는 왕복 7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②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쇼핑몰 등)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사업 미개시로 해당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
------	---	---

*사업 미개시로 해당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동까스 1988]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또한,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원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6조 제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동까스 1988]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약정해지**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유예기간 없이 해지하는 **즉시해지** 2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해지 사유

< 귀하가 당사에 대해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귀하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동까스 1988』 가맹사업시스템의 명성이나 신뢰가 훼손되어 귀하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대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대해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1회 이상 당사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약정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귀하가 당사의 개점 준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 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맹계약서 제34조
2. 당사에 대한 상품대금 연체, 기타채무불이행 경우	
3. 귀하가 경업 또는 겸업행위를 한 경우	
4. 당사의 경영지도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경우	
5.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공급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경우	
6.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당사의 영업표지를 당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7.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8.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 한 경우	
9.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10. 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11. 귀하가 가압류·가처분(단순 채권보전인 경우 제외), 조세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12. 귀하가 본 계약서상에서 정한 일체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3.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당사에게 해지권이 유보되거나, 귀하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2) 즉시해지 사유

< 귀하가 당사에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1. 당사가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당사가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또는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단, 영업양도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사가 귀하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5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위 즉시해지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본 가맹계약서 제35조 제1항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 상호 합의를 한 후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식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41조 제1호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제41조 제2호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가맹점사업자가 위 계약수정사유에 따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갱신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양수가맹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지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위탁행위는 불가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8. 경업 또는 겸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 또는 겸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동까스 1988]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돈까스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시설 내에서 동까스 1988 이외의 영업활동 및 사업체운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동까스 1988]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당일11:00~24:00 원칙(점포 여건 및 유사업종의 영업시간, 고객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본 계약 체결 시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주 6일 이상 월26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고,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단, 법정 공휴일로 인해 연속적인 휴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봅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말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6평기준 1명 이상의 상주 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가맹사업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압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분기	가맹사업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가맹사업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귀하는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동까스 1988] 브랜드 이미지 제고(상품광고) 또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비용은 아래와 같이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기타 지역 광고의 경우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50%	50%(1/가맹점 사업자n)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50%	50%(1/가맹점 사업자n)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팸플렛, 전단, 리플렛, 카달로그 등 제작	없음	전액부담	-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는 50%이상, 판촉은 70%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당사는 전체 가맹점주에게 광고비(판촉비) 분담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촉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는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써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하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8조[비밀유지의무], 제19조[경업 또는 겸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위약금조로 각 금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③ 귀하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가맹계약서 제36조 제1항내지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1일당 금1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2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 상품]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당시 3개월 월평균매출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 합니다.
- ⑤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가 있다.
- ⑥ 귀하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⑦ 귀하가 제22조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당사의 허락없이 메뉴의 조리레시피를 변경하거나 소스 등 재료를 변색·변질하여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또는 임의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다른 점포에 판매하는 경우 위약별로 당사에게 금일천오백만원(₩15,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이십만원(₩200,000)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⑧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정사양(제조원/판매원 등)의 필수품목 이외에 품목을 구입/사용하거나 지정된 메뉴 이외의 메뉴를 판매할 경우 【냉장고 보관 시에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적발 즉시 위약별로 금이백만원(₩2,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이십만원(₩200,000)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⑨ 귀하가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7]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19.8㎡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8P~9P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0(3일)	
가맹금 예치	- 해당없음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등공사	- 공사 실시, 필수 설비 구입	D-24~5(20일)	
최초 상품 공급	- 초도물품 공급	D-2~1(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 절차	비용 부담 제외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바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자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한 경우에는 점포환 경 개선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 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 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관측,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 → 가맹점 현황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 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관측,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 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시

		게 제시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동까스 1988]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메뉴 조리 -마케팅 -고객 응대 -위생 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 친절 교육 - 마케팅교육 - 판매 촉진방안 등	집단 강의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동까스 1988]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3일	2,200 (가맹금내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정기) 교육	5시간	100/1인당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가맹점 개점 전까지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개점 승인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1599-481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tokyonfood.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현황 전체

2021년 ~ 2023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필수 원부재료 등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일: 20 년 월 일